

수출바우처 서비스 활용 및 정산가이드

2020. 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수출바우처사업 메뉴판 >

구분	세부 내용
디자인 개발	- 정의 : 해외 진출에 필요한 각종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외국어 종이/전자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BI·CI 등
홍보 동영상	- 정의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조사/일반 컨설팅	- 정의 :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국내·외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 조사,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경영 멘토링,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수립, 해외수출 전략수립 및 이행을 위한 포괄적 지원, 해외진출 및 마케팅전략 컨설팅 등
통번역	- 정의 :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역량강화 교육	- 정의 :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중국시장 e-러닝, 내부역량강화, 전략물자, CP 실무자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 시장 개척과정 교육,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과정,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방안 등
해외규격인증	- 정의 :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대행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단, 해외규격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
특허/지재 권/시험/ AEO인증	- 정의 : 특허·지재산권 취득, 시험 대행, AEO인증 획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현지 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지재산권 분쟁지원, AEO인증 획득 등
서류대행/ 현지등록/ 환보험	- 정의 :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등 서류 대행 및 현지법인·지사·대표처 등록, 현지 입점대행, 환보험 등
홍보/광고	- 정의 :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및 사후정산,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IMC 마케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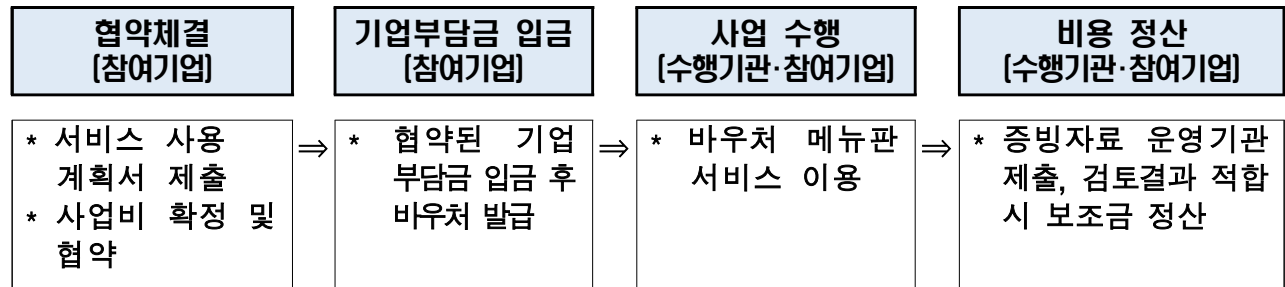
구분	세부 내용
브랜드 개발·관리	- 정의 :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 정의 : 전시회/상담회/세미나/설명회 등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지원, 해외시장 산업설명회, 판촉전,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사후정산,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의료기기 제품설명회 등
법무·세무· 회계 컨설팅	- 정의 :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 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 상기 표의 세부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에 불과하며, 분류에 대한 기준 수립 및 유권해석은 수출바우처 관리기관 결정사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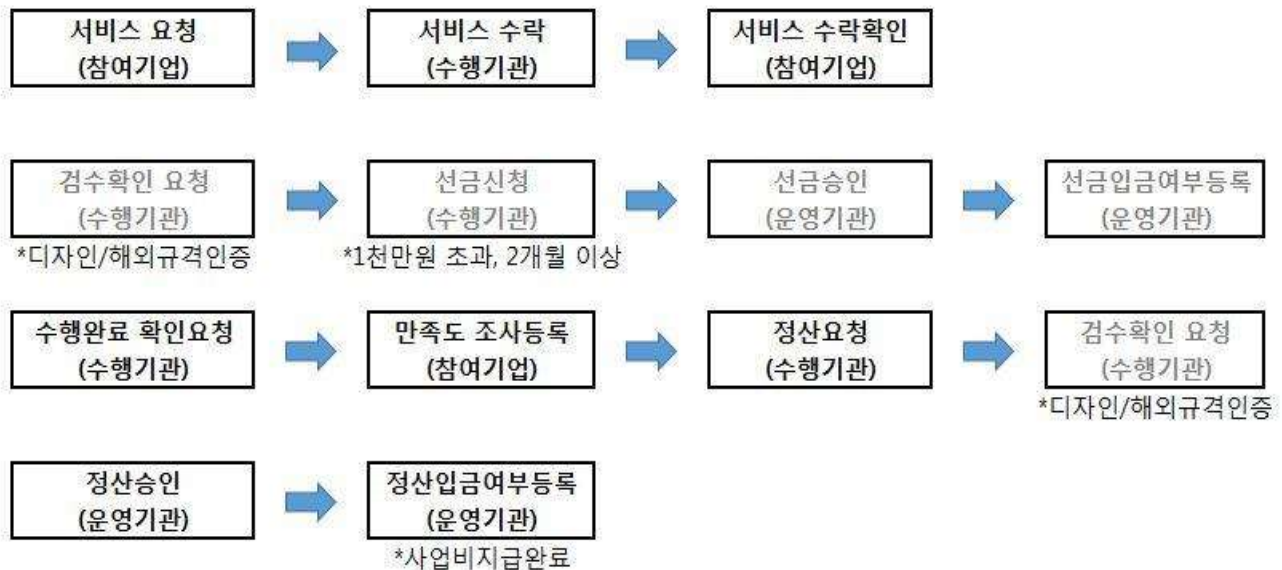
수출바우처 서비스 분류별 정산기준 및 증빙서류

□ 서비스 활용 절차

< 수출바우처 서비스 활용 절차 >



○ 정산 절차



- 先 집행 後 정산 원칙

- (선금 신청) 서비스 공급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고, 서비스 제공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서비스일 경우 수행기관이 참여기업의 동의를 얻어 공급가액의 30%를 선금으로 요청 가능

* 이행지급보증증권 2종 및 표준계약서[별지 제08호] 제출 필수

* 이하 “수출바우처사업 선금 및 잔금 신청안내”(공지사항276번, 2019.12.02.) 참조

- (수행완료 확인요청) 분류별 결과보고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제출

< 서비스 분류별 결과보고서 양식 >

서비스 분류	결과보고서 양식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 디자인 분야 결과보고서 양식 [별도 공지]
해외규격인증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결과보고서 양식 [별도 공지]
해외전시회 참가	* [별지 제02호, 제03호]전시회 참가 결과 보고서+ [별지 제08호]표준 상담 양식 or 자체상담일지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의료기기 제품설명회 개최	* [별지 제05호] 제품설명회 개최결과 보고서
해외홍보/광고 사후정산	* [별지 제06호] 해외홍보/광고 수행결과 보고서
항공임 사후정산	* [별지 제07호] 항공임 사후정산 신청서
기타	* [별지 제01호]결과보고서 or * 수행기관 자체 양식 결과보고서

* 수행기관이 KOTRA 등 공공기관인 경우 자체 양식 결과보고서 인정

- (정산 요청) 참여기업의 만족도조사 등록이 완료되면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산요청

* 정산은 수행기관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외전시회, 해외규격인증지원 해외 홍보/광고, 전시회 참가 항공임 등 사후정산 건은 참여기업이 신청

* 참여기업이 부가세를 수행기관에 입금한 뒤 정산요청 가능

※ 국내/외에서 부과된 부가세 및 환전·송금수수료 지원 불가

* 세금계산서 발행·계좌송금 또는 카드결제(일시불)가 원칙이며 현찰거래 인정불가

※ 부가세 입금은 계좌송금만 인정(카드결제, 현찰거래 불가)

※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해외 수행기관은 계좌정보(예금주, 예금주 주소, SWIFT CODE, 계좌번호, 은행명, 은행주소 등)가 명기된 인보이스 발행

* 운영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서비스 세부산출내역서[별지 제 09호] 제출

- (정산 승인) 운영기관 또는 회계법인 검토 후 정산승인

* 디자인 및 해외규격인증 분야 서비스는 정산요청 시 총괄수행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 KTL)에서 검수완료 후 운영기관

* 증빙자료의 미비 및 보완사항 발생 시 운영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행

- 검토결과 적정 시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www.exportvoucher.com)에 등록한 계좌*로 대금 입금

* (법인) 법인 계좌, (개인) 대표자 명의 사업용 계좌, (해외) 해외법인 계좌

□ 서비스 분류별 정산기준 및 증빙서류

1 디자인개발

①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 기업의 제품(상품)의 홍보를 위한 외국어 카탈로그, 브로셔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국어 지원 불가)(인쇄비 지원 불가)
- 카탈로그 최대 단가는 28p를 기준으로 하여 6,000,000원이며, 28p 미만일 경우 6,000,000원 미만으로 협약

※ 외국어/한국어 병용* 제작 시 정산 가능하나 외국어 비중이 현저히 낮거나 국문 위주로 제작된 결과물의 경우 정산 불가

* 병용이란 1개 결과물 내 2개 언어가 동시에 활용되는 경우를 말하며, 국문 결과물이 별도 제작되는 경우 불인정

※ 포스터 및 배너등 일반판촉물은 지원 불가

《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총괄수행기관→운영 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수행기관→참여기업) ② 부가세 입금증(송금증)(참여기업→수행기관) ③ 결과보고서(카탈로그, 브로셔 등 증빙서류 포함) ④ 견적서 또는 세부산출내역서 ⑤ 표준계약서(선금신청 시에만 해당)[별지 제08호] ⑥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신청 시에만 해당)

② 외국어 제품/포장 디자인 개발

- 제품의 수출을 위한 제품 디자인 및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외국어 디자인개발(포장 및 제품 등)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총괄수행기관→운영 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수행기관→참여기업) ② 부가세 입금증(송금증)(참여기업→수행기관) ③ 결과보고서(카탈로그, 브로셔 등 증빙서류 포함) ④ 견적서 또는 세부산출내역서 ⑤ 표준계약서(선금신청 시에만 해당)[별지 제08호] ⑥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신청 시에만 해당)

③ 외국어 홈페이지, 모바일 앱, 상품페이지 제작

- 참여기업의 외국어 홍보용 홈페이지, 모바일 앱, 상품페이지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한국어 홈페이지 지원 불가)

※ 외국어/한국어 병용* 제작 시 정산 가능하나 외국어 비중이 현저히 낮거나 국문 위주로 제작된 결과물의 경우 정산 불가

* 병용이란 1개 결과물 내 2개 언어가 동시에 활용되는 경우를 말하며, 국문 결과물이 별도 제작되는 경우 불인정

《외국어 홈페이지, 모바일 앱, 상품페이지 제작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총괄수행기관→운영 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수행기관→참여기업) ② 부가세 입금증(송금증)(참여기업→수행기관) ③ 결과보고서(카탈로그, 브로셔 등 증빙서류 포함) ④ 견적서 또는 세부산출내역서 ⑤ 표준계약서(선금신청 시에만 해당)[별지 제08호] ⑥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신청 시에만 해당)

④ BI · CI 개발

- 참여기업의 BI 및 CI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BI·CI 개발 외 네이밍 브랜딩 컨설팅 등은 디자인개발 분야가 아니므로, 브랜드 개발/관리 서비스 분야 활용

※ 매뉴얼, 가이드 내용은 국문으로 작성 가능하나, 어플리케이션 내용은 국문 지원 불가하며 참여기업에서 활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내용으로 개발 필요

《BI, CI 개발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운영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수행기관→참여기업) ② 부가세 입금증(송금증)(참여기업→수행기관) ③ 결과보고서(BI, CI 개발 완료 파일 등 증빙서류 포함) ④ 견적서 또는 세부산출내역서 ⑤ 표준계약서(선금신청 시에만 해당)[별지 제08호] ⑥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신청 시에만 해당)

① 외국어 홍보동영상 제작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국어 비용 지원 불가)
- ※ 국문 나레이션 등의 비용은 정산 불가하며, 기존 영상 단순 번역(자막, 나레이션 추가) 결과물 지원 불가

《 홍보영상제작비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총괄수행기관→운영 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수행기관→참여기업) ② 부가세 입금증(송금증)(참여기업→수행기관) ③ 결과보고서(카탈로그, 브로셔 등 증빙서류 포함) ④ 견적서 또는 세부산출내역서 ⑤ 표준계약서(선금신청 시에만 해당)[별지 제08호] ⑥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신청 시에만 해당)

※ 디자인개발 / 홍보 동영상 분야 정산요청 시 유의사항

- 해당 분야는 정산 진행 이전 총괄수행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 031-780-2214, 2105)의 검수가 필요하며, 검수결과 부적정 시 금액조정(부분정산)이 있을 수 있음
- [수행완료 확인요청] 이전 결과물을 참여기업이 활용하는 경우 검수 보류(보완요청)될 수 있으니 검수 완료 후 활용 요망
- 검수결과 보류, 금액조정(부분정산)은 참여기업 협약기간 내 보완하여 재평가 진행 가능
- 평가를 위한 결과물 접수 일정은 총괄수행기관에서 수행기관으로 별도 공지하며(공지사항 및 메일 확인 必) 관련 자료는 수출바우처 사이트 및 웹하드 별도 제출 필요
- 분야별 표준 단가 및 세부 안내는 [커뮤니티 > 자료실 > 디자인개발 / 홍보동영상 분야 설명회 자료 공지] 확인
(참고 1의 자료는 상시 업데이트될 수 있으므로 수시 확인 필요)

【<디자인개발> 참고 1】

디자인 개발 분야 표준 단가

(2020.03.06. 기준)

지원분야	기준단가	참여기업 한도
외국어 종이 카탈로그	최대 600만원 (28페이지 기준) * 28페이지 아래일 경우 금액하향	최대 3건 * 언어 3종 혹은 서로 다른 내용, 다른 디자인 3건 지원 가능
외국어 포장 디자인	A안 600만원 이내 B안 800만원 이내 C1안 200만원 이내 C2안 350만원 이내	최대 1건 (언어 3종 까지 인정)
외국어 홈페이지	A안 700만원 이내 (템플릿 활용) B안 2,000만원 이내 (자체 개발)	최대 1건 (언어 3종 까지 인정) * 디자인 위주로만 지원되며, 기술 지원은 금액지원 불가
외국어 전자 카탈로그	최대 600만원 이내 * 단순 e-book 형태는 지원불가 (PPT, Prezi등의 형태 불가)	최대 3건 * 언어 3종 혹은 서로 다른 내용, 다른 디자인 3건 지원 가능
외국어 모바일 앱	최대 500만원 이내	최대 3건 * 언어 3종 혹은 서로 다른 내용, 다른 디자인 3건 지원 가능
외국어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최대 100만원 이내	최대 3건 * 언어 3종 혹은 서로 다른 내용, 다른 디자인 3건 지원 가능
제품디자인	렌더링 지원 1,500만원 이내 목업지원 3,000만원 내외	최대 1건
외국어 동영상	A안 700만원 이내 B안 2,000만원 내외	최대 1건
BI/CI	A안 2,000만원 이내 (어플리케이션 10종 내외) B안 2,500만원 이내 (어플리케이션 15종 내외) C안 3,000만원 이내 (어플리케이션 20종 내외)	최대 1건

※ 상기 표준 단가는 2020.03.06. 기준이며,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www.exportvoucher.com) 공지사항을 수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 개발 분야 외 타분야는 디자인개발 서비스에서 지원 불가능합니다.

※ 동일 디자인에 언어를 추가하여 개발하는 경우 **번역비와 일부 편집**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 원 계약 건의 50% 이내 금액으로 인정합니다. (단, 언어 비중이 현저히 낮을 시 금액조정이 있을 수 있음)

예) 같은 디자인에 서로 다른 언어 3건일 경우에 A-외국어1 600만원 A- 외국어2, 3은 300만원이하로 진행가능

3

조사/일반 컨설팅

- ※ 컨설팅 보고서 작성 시 인용 문구의 원문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각주, 내주, 참고문헌 등 출처 표기 필요
- * Chicago, APA, MLA, Vancouver 출처표기법 사용을 권고하며, 법률 인용 시 사법연수원 발간 ‘법률문헌의 이용방법 표준안’의 2017년 증보판 기준으로 작성 권장
- * 불성실한 출처 표기에 대한 운영기관의 정산 보완요청에 불응 시 정산거절

① 조사 · 정보

- 조사·정보 지원내용
 - 해외시장조사, 소비자리서치, 경쟁제품 동향 조사
 - 바이어발굴조사, 바이어DB타겟 마케팅
 - * 바이어 국내초청/현지 바이어매칭 상담회 등은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에 해당
 - 수출을 위한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등

《 조사·정보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운영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인보이스(해외기업)(수행기관→참여기업) ② 부가세 입금증(송금증)(참여기업→수행기관) ③ 결과보고서(자체양식 사용가능, 표절검사 권장) ④ 표준계약서(선금신청 시에만 해당)[별지 제08호] ⑤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신청 시에만 해당)

② 국외기업(바이어)신용조사

- 국외기업(바이어)의 신용등급조회를 위한 서비스 비용지원

《 신용인증 서비스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운영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인보이스(해외기업)(수행기관→참여기업) ② 부가세 입금증(송금증)(참여기업→수행기관) ③ 결과보고서(신용등급 보고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④ 표준계약서(선금신청 시에만 해당)[별지 제08호] ⑤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신청 시에만 해당)

③ 전략컨설팅

○ 전략컨설팅 지원내용

- 수출 관련 경영 멘토링, 해외 목표시장 수출전략(로드맵) 수립 코칭
- 해외진출기업 중장기전략 컨설팅
- 투자 유치 컨설팅,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컨설팅 등

《 전략컨설팅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운영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인보이스(해외기업)(수행기관→참여기업) ② 부가세 입금증(송금증)(참여기업→수행기관) ③ 결과보고서(자체양식 사용가능, 표절검사 권장) ④ 표준계약서(선금신청 시에만 해당)[별지 제08호] ⑤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신청 시에만 해당)

① 외국어자료 통번역

- 인콰이어리, 바잉오퍼 등 레터, 계약서류, S/W, 제품매뉴얼과 같은 수출을 위한 각종 자료 번역과 해외 비즈니스 통역서비스 지원
- 외국어↔한국어, 외국어↔외국어 통·번역 모두 가능
- 개별 통·번역사 섭외 시 지원 불가하며, 지정 수행기관 활용 필수

《 외국어자료 통번역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운영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인보이스(해외기업)(수행기관→참여기업) ② 부가세 입금증(송금증)(참여기업→수행기관) ③ 결과보고서(번역결과물, 통역사진 등 증빙첨부) ④ 통역 또는 번역사 신분증 ⑤ 통역 활용 행사소개자료(통역의 경우) ⑥ 표준계약서(선금신청 시에만 해당)[별지 제08호] ⑦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신청 시에만 해당)

5

역량강화 교육

① 교육 지원

- 무역실무교육(온·오프라인), 해외마케팅 역량강화, 지식재산권 역량 강화 교육, 외국어 교육 등 수출 및 해외진출 관련 교육 지원
- 교육비 환급과정 교육 참가 시 환급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한하여 지원
-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경우 지원 불가

《 교육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운영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인보이스(해외기업)(수행기관→참여기업) ② 부가세 입금증(송금증)(참여기업→수행기관) ③ 교육 안내자료 ④ 결과보고서(교육수료증 또는 교육수료확인서 첨부) ⑤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명부(교육 참가자 성명확인) ⑥ 표준계약서(선금신청 시에만 해당)[별지 제08호] ⑦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신청 시에만 해당)

◀ 부적정 집행 사례 ▶

- 참여기업의 임직원이 아닌 제 3자의 교육비를 정산 요청한 경우
- 정부·지자체 등이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한 비용을 정산 요청한 경우
- 교육비 환급과정의 환급대상액을 정산 요청한 경우

①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참여기업 해외규격인증 진행 방법 이원화 (Two-Track)

- 해외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인증비용, 심사, 컨설팅 비용, 현지책임 회사 비용 등을 지원
- 수행기관 또는 자체적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 서비스를 추진하고, 수행결과에 대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결과보고 검수 후 사업별 운영기관에서 해당비용 정산

<참여기업 해외규격 서비스진행 방법 이원화(Two-Track)>

진행 방법	참여기업은 Two-Track 으로 해외규격인증 진행 후 수출바우처 사이트를 통해 결과물에 대한 검수 및 바우처정산(사후정산) 진행																		
Track 1 (지정형) 수행기관 통한진행	설명	• 참여기업: 등록된 해외인증분야 수행기관을 선택·계약 후 인증획득 진행 의뢰 • 수행기관: 인증획득 진행 및 결과물(결과보고서) 검수 요청 및 바우처 정산진행 * 결과보고서(증빙서류 포함)는 수출바우처 사이트 등록 후 반드시 KTL로 우편 발송																	
	진행 방법	<table><tr><td>수행기관 선택</td><td>⇒</td><td>바우처 계약</td><td>⇒</td><td>인증획득 진행</td><td>⇒</td><td>검수</td><td>⇒</td><td>바우처 정산*</td></tr><tr><td>참여기업</td><td></td><td>참여/수행 기관</td><td></td><td>참여/수행 기관</td><td></td><td>총괄수행</td><td></td><td>운영기관</td></tr></table>	수행기관 선택	⇒	바우처 계약	⇒	인증획득 진행	⇒	검수	⇒	바우처 정산*	참여기업		참여/수행 기관		참여/수행 기관		총괄수행	
수행기관 선택	⇒	바우처 계약	⇒	인증획득 진행	⇒	검수	⇒	바우처 정산*											
참여기업		참여/수행 기관		참여/수행 기관		총괄수행		운영기관											
Track 2 (개방형) 참여기업 단독진행	설명	• 참여기업 : 직접 시험·인증기관을 통해서 직접인증획득 진행 결과물(결과보고서) 검수 요청 및 사후 정산진행 * 결과보고서(증빙서류 포함)는 수출바우처 사이트 등록 후 반드시 KTL로 우편 발송																	
	진행 방법	<table><tr><td>인증획득 진행</td><td>⇒</td><td>검수</td><td>⇒</td><td>사후정산**</td></tr><tr><td>참여기업</td><td></td><td>총괄수행</td><td></td><td>운영기관</td></tr></table>	인증획득 진행	⇒	검수	⇒	사후정산**	참여기업		총괄수행		운영기관							
인증획득 진행	⇒	검수	⇒	사후정산**															
참여기업		총괄수행		운영기관															

* 바우처정산 : (해외인증분야)수행기관이 검수결과보고 등록·정산 진행

** 사후정산 : 참여기업이 직접 결과보고 등록·정산 진행

*** 해외규격인증 분야 20년도 결과보고서 및 정산가이드 참조 : www.exportvoucher.com
=> 커뮤니티 => 자료실

- 정부, 지자체 등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다만, 제품분야별 · 신청품목 ·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 가능
- 바우처 표준계약, 선금, 검수 결과보고 및 정산 등 인증건별로 작성 및 처리
- **(결과보고검수)** 국내·외 공인 인정기구(APLAC, ILAC)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 여부 및 성적서·인증서 등의 위변조 등을 확인

* 제품시험기관 자격기준 : **참고 1**

*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제품)규격인증 현황 및 산업별시스템인증 : **참고 2**

※ 2020년 검수결과보고양식 등 수출바우처 자료실 공지 참고

진행방식	계약여부	결과보고형태	내용	인증취득구분
수행기관양식 / 참여기업단독양식	○ 표준계약必 (참여-수행기관) ○ 표준계약非 (참여기업단독)	인증 완료 보고 양식 (Set 개념)	인증완료개념 : 결과보고시 해당 인증 Scheme에서 요구되는 CoC 및 DoC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예) CE LVD의 DoC 인정범위는 안전성적서, 전자파성적서, RoHs 성적서등을 갖춘 상태에서 DoC 발급시 인정 예) CE MDD의 경우 CoC 인정범위는 안전성적서, 전자파성적서, 심사보고서, 인증서 등을 갖춘 경우 CoC로 인정	인증취득 완료
		부분 완료 보고 양식	- 부분완료의 개념 : 사업기간(1년)내에 성실히 인증진행을 했으나 결과보고 시 인증 Scheme에서 요구되는 CoC 및 DoC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 한 경우로 적합으로 인정 완료된 성적서, 심사보고서 및 인증서 등을 제출 시 인정 가능함. - 수행기관 진행시 참여기업 서면 확인 후 비용 인정가능 예) CE LVD의 안전성적서, 전자파성적서, RoHs 등 1개 이상 완료 된 경우 예) CE MDD의 경우 CoC 인정범위는 안전성적서, 전자파성적서, 심사보고서, 인증서 등 1개 이상 완료 된 경우	부분 완료
		성실 실패 보고 양식	- 인증 진행 중 부적합으로 발급된 성적 또는 인증서로 사업기간(1년)내에 성실히 인증진행을 위한 Debugging 등을 진행 했으나 부적합으로 판명된 성적서 또는 인증서 - 수행기관 진행시 참여기업 서면 확인 후 비용 인정가능	인증취득 실패 (성실실패)

- **(선급금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 해외규격인증분야의 수행기관은 관리지침에 따라 선급금 요청이 가능하며, 요청된 선급금에 대한 총괄수행기관의 적정 여부 검수완료 후 운영기관에 선금을 요청

※ 수행기관은 서비스 공급가액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서비스 제공 소요 기간이 2개월 이상일 경우 참여기업의 동의를 받아 운영기관에게 서비스 공급가액의 30%를 선금으로 요청가능

※ 해외규격인증분야 서비스 공급가액(시험비, 심사비, 인증비, 컨설팅비 등)만 지원되며 부가세는 지원 제외

※ 총괄수행기관에 제출할 서류 :

(1) 수행기관이 참여기업에 발행된 서비스공급가액에 대한 전체내역이 있는 견적서
(시험비, 심사비, 인증비, 컨설팅비로 구분)

· Invoice 또는 계약서(수행기관-참여기업)도 가능함

(2) 시험·인증기관에 발행된 시험비, 심사비 인증비에 대한 견적서

· Invoice 또는 계약서도 가능함

※ 선금금 요청 시 운영기관에 제출될 서류는 별도 운영기관 지침에 따른다.

○ (항목별 지원한도) 인증비, 시험비, 심사비, 컨설팅 비용, 현지 책임회사 비용 등 지원

구분	내용	한도 금액	지원비율
① 인증비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등	①	수출 바우처 사업별 한도 기준
② 시험비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②	
③ 심사비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등	③	
④ 컨설팅비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인증단계에 따른 비용연동	④ (①+②+③)2단계이내 × 20% (①+②+③)3단계이상 × 30%	(인증 수 제한없음)
⑤ 현지책임회사비	현지책임회사가 필수인 경우	⑤ 각 인증별 별도한도 지정 : 참고3	

1) 수행기관과 진행시 수행기관에서 인증소요비용을 先부담 후 바우처 後 정산

2) 참여기업 단독 진행시 참여기업에서 인증소요비용 先부담 후 바우처 後 정산

3) 성적서(시험), 심사보고서, 인증서 등 결과물은 참여기업의 해당 사업기간內 발행된 건만 비용지원

4) 컨설팅비는 해외규격인증분야에 등록된 수행기관의 컨설팅비용만 인정됨.

(컨설팅비용은 인증단계에 연동이 되며 단계에 따른 20% 또는 30% 한도 적용)

※ 非지원혜택 인증 및 컨설팅비는 별도 선정 및 지원한도산정

ex) FDA-OTC, CFDA(화장품, 식품 등) 등 컨설팅비 별도 산정

5) CE 의료기기 II 이상 기술문서비(60601-1 3판) 별도 지원한도 산정

※ 인증획득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비, 심사비 등은 총 비용에서 제외

※ 시험비, 심사비, 인증비는 공인 기관에서 청구된 비용만 인정

: 【참고1】 제품시험기관 자격기준

6) CoC 및 DoC 분야별 인정기준

- (1) CoC(공인적합인증, Certificate of Conformity) 분야 : 제3자(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으로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 (2) DoC(자기적합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 분야 :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함을 선언하거나 시험성적서로 인증이 갈음되는 경우(인증 규정상 제3자(인증기관)가 관여하지 않는 인증 포함)
- 7) 현지책임회사 비용은 인증별 별도 한도금액까지 지원(제품당)
- ※ 각 인증별 한도금액 : **참고 3**
- ※ 2019년 이후 수출바우처 선정기업만 책임회사비용 지원 (책임회사에 대한 내용을 인증서, 성적서 등 증빙 가능시)
- ※ 상기 이외의 인증건에 발생하는 현지책임회사 비용은 지원 불가
(단, 수출국 관련법의 변경 등에 따른 책임회사 대리인이 필수 인 경우 타당성 검토 후 향후 지원여부 결정됩니다.)
- ※ 2020년 컨설팅 비용 한도, 책임회사 비용 등 수출바우처 자료실 공지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정산 증빙서류 》

	제출 서류
해외규격 인증분야	① 검수결과보고서 (바우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에 유첨) ② 다음 각 해당하는 경우 제출 필요 - 인증서 사본 1부(DOC의 경우는 참여기업의 적합 선언문 사본 1부) ※ 인증 만료기간이 확인 가능한 이전 인증서 1부 (갱신에 한함) - 시험성적서 1부 (각 시험규격별 요약본) - 기술문서 1부 (해당인증 취득 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 공장심사 보고서 1부 (공장심사를 진행한 경우에 한함) - 인증비용, 시험비용, 심사비용, 컨설팅 비용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등 각 1부 - 현지책임회사비용 증빙서류 (인증서, 성적서, 접수증 중 1부) 및 송금증 - 기타 비용에 요구되는 서류 (송금내역, 부가세 등) - 기타 총괄수행기관 및 운영기관에서 검수 및 정산 시 요구되는 서류

※ 해외규격인증 문의처 및 결과보고서 우편발송 주소:

- 주 소 : (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87(구로동) 711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출바우처지원팀
- 전 화 : 일반문의 02) 860-1304
검수 관련 문의 02) 860-1306,1307,1312
사업운영 문의 02) 860-1320

※ 해외규격인증 분야는 총괄수행기관인 KTL의 방침에 따라 상기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커뮤니티]-[자료실]을 통해 공지 예정

제품 시험기관 자격기준

□ 제품시험기관(Lab) 자격기준

(DOC 또는 시험성적서 만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인증에 한하여 적용함)

- ① KOLAS 등 APLAC 및 ILAC에 Full-Member로 등록된 국가기구에서 지정한 시험기관 또는 CBTL 시험기관만을 인정함
- ② KOLAS의 시험기관 인정분야에 해당하지 않은 시험의 경우, **지원규격별 해당 인증기관 및 해당 인증기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을 인정함**

* KOLAS 인정분야 확인 : KOLAS (www.kolas.go.kr)

* Full-Member 확인 : APLAC (www.aplac.org), ILAC (www.ilac.org)

20년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제품)규격인증 현황 (360개)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미국 (69)	3-A (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AAR (미국철도협회)	ABS (미국선급협회)
	ACMI AP (미국장작재료협회)	AGA (미국가스협회)	AHRI (미국제냉난방협회)
	AISC (미국 강구조물 협회)	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ANSI (미국규격협회)
	ANSI/ASHRA (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ANSI/BHMA (미국건축제품인증)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API (미국석유학회)	ASME (미국기계학회)	ASTM (미국시험재료협회)
	BPI (미국생분해성제품인증)	CPSA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IA (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TI (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DLC (북미에너지절감인증)	DOT (미국운수성)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에너지효율)	UL Hazloc (북미방폭인증)	EPA (미국환경보호국인증)
	ETL (Electrical Testing Laboratories)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생인증)	Energy Star (미국에너지스타)
	FHWA (미국연방고속도로관리국)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N (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FDA (미국식품의약품국)	FDA-GRAS (미국식품안전물질등록)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Fugitive Emission Test (밸브유해물질 누설인증)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연방항공국)	Gold Seal (미국음용수관련인증)
	GSA (미국연방조달청)	Green Seal (친환경인증)	HIRF (High Intensity Radiated Fields)
	IACP (국제 경찰청장협회)	IAPMO (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ITE Compliance (북미신호등인증)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MiamiDade NOA (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MIL-STD-810G (미국육군장비규격)
	NCHRP (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	NEBS (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시스템)	NFRC (창호단열규정)
	NSF (미국국가공중위생국)	NTEP (미국전자저울인증)	NGV2 (고압연료탱크 규격)
	NIJ (미법무성사법연구소)	NIOSH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NMMA (미국요트레일러인증)
	NOP (유기제품인증)	NPC (미국위생도기규격)	NR (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
	NRTL (미국국가인정시험소)	PTCRB (북미휴대폰인증)	SCS (미국 과학적 환경인증시스템)
	SRCC (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UPC (미국배관및기계인증)	USCG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USDA (미국농무성환경인증)	UL ECV (환경성 주장 검증)	Water Sense (미국환경보호국인증)
	WHI (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	WQA (미국수질협회)	WH-ETL (Warnock Hersey Mark)
유럽 (30)	AdBlue (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BPR (유럽살생물제 관리법)	BSI BS EN489 (열(히트)파이프지침)
	CCNR (라인강 항해 중앙위원회 인증)	CE (유럽공동체마크)	COSMOS (유럽유기농및천연화장품인증)
	CPNP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Eco-Labeling (EU 환경마크)	ECO-PASSPORT
	EFSA (유럽식품안전청)	e-Mark (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ENEC (European Norms Electrical Certification)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ESV (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EN ISO 20471 (반사색 안전조끼 인증)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EU-MED (유럽선박장비인증)	FIBC (산업용포장재의 정전분류)	M Classification (공공건물 내 섬유 재료 규제)
	MPA (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Novel Food (신규 식품과 신규 식품 첨가제에 대한 인증)	Oeko-tex (유럽섬유환경인증)
	REACH (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RoHS (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SEMI (유럽반도체장비인증)
	Solar Keymark (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Regulation EC No 1223/2009 (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 1935/2004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 79/2009 (유럽수소자동차규제지침)	ECR R4404 (유럽유아용카시트안전규정)	EN14470-1 (Fire safety storage cabinets – Part 1: Safety storage cabinets for flammable liquids)
네덜란드(2)	KEMA (네덜란드전기시험소)	Kiwa Water Mark (네덜란드위생안전인증)	
덴마크(1)	DEMKO (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독일 (14)	AD2000 (독일압력용기 인증)	BDIH (독일유기농마크인증)	DIN (독일규격협회)
	DVGW (독일가스식음료전문가협회)	GS (독일품질안전)	GL (독일선급협회)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식수관련인증)	LFGB (독일식품용품법)	LGA (독일 바이에른 공업시험청)
	LTF (독일감항성시험)	TUV (독일기술관리협회)	VDE (독일전기기술자협회)
	VdS (독일 보험협회 인증)	Dermatest (화학제품 피부자극성 등급인증)	
영국 (9)	Allergy UK (영국알러지협회)	ASTA (영국 안전규격)	BABT (영국통신기기승인)
	BBA (영국건자재인증)	BSI (영국표준협회)	FIRA (영국가구산업연구협회)
	I-LIDS (영국 경찰 비디오분석 인증)	LR (영국선급협회)	WRAS (영국수질협회인증)
이탈리아 (2)	IMQ (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RINA (이탈리아선급협회)	
프랑스 (6)	BV (프랑스선급협회)	CSTB (프랑스 건축자재 인증)	DGCCRF (프랑스의소비자보호및불공정 경쟁감시국인증)
	ECOCERT (프랑스 생산공장 인증)	GTT (프랑스 GTT 선급)	NF (프랑스표준규격)
벨기에 (2)	CEBEC (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Vincotte (벨기에 환경인증)	
스페인 (1)	AENOR (스페인규격협회)		
핀란드 (1)	FIMKO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스웨덴 (2)	SEMKO (스웨덴전기기기협회)	SP (스웨덴 국립시험연구협회)	
노르웨이 (4)	DNV (노르웨이선급협회)	NIPH (노르웨이 음용수관련 인증)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NEMKO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스위스 (1)	ESTI Safety Mark (전기자동차 충전플러그 인증)		
일본 (26)	BAA (일본자전거승인)	BOKEN (일본방적검사협회)	F☆☆☆☆ (일본친환경규격)
	F-mark (일본전기용품및부품)	FESC (일본 소방설비 인증)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JAPAN MIC (구. TELEC) (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JAS(일본유기제품인증)	JATE (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JET PVM	JPAL	JHOSPA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일본태양광인증)	(일본의료기기)	(일본위생수지협의회인증)
	JIS (일본표준규격)	JWWA (일본상수도협회)	MPHPT (일본우정통신성)
	NK (일본선급협회)	PSC(Product Safety Consume) -일본소비생활용품안전인증	PSE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S-mark (일본전기용품시험소)	VCCI (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일본ECO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일본건축자재평가	일본국토교통성인증	일본불연재료인증
	일본위생허가	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
러시아 (10)	CU (러시아강제인증)	RS (러시아선급협회)	수출·입수산물·수산물공품 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GOST (러시아표준규격)	RT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s)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소방안전증명서(러시아)
	EAC SCR (EAC State Registry Certificate)		
우크라이나 (1)	Uni Cert (Ukrainian Scientific Certification Institute)		
말레이시아 (2)	SIRIM (말레이시아 표준산업규격)	MDA (말레이시아의료기기등록)	-
멕시코 (3)	COFETEL (멕시코통신인증)	NOM (멕시코 제품안전규격)	SSA (멕시코 보건부-위생등록)
대만 (5)	ARTC (대만자동차 및 부품인증)	CR (대만선급)	TFDA (대만 의료기기)
	BSMI (대만 표준검험국)	CNS (대만국가표준)	-
태국(2)	태국 식약청	TISI (태국표준공업규격규제)	-
브라질(3)	ANVISA (브라질 식품의약품 인증)	ANATEL (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INMETRO (브라질 강제인증)
사우디 아라비아(2)	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SFDA (Saudi Food & Drug Authority)	-
터키(1)	TSE (터키 강제인증)	-	-
싱가포르 (4)	BS476-22 (방화도어 테스트)	HAS (싱가포르 의료기기 등록)	SINGAPORE GREEN LABEL
	PSB (싱가포르 생산성표준원)	-	-
아르헨티나 (2)	ANMAT (아르헨티나 의료기기인증)	IRAM (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
인도(11)	ARAI (인도 자동차 협회)	BIS (인도제품인증)	CPRI (인도전기전력인증)
	CDSCO (인도약품표준통제국)	DCG인도식약청	IRS (인도선급인증)
	IBR (인도 보일러 규정)	RDSO (인도 철도인증)	TRA (인도 및 티벳지역 농자재 인증)
	WPC (인도 통신기기 인증)	인도자동차부품인증 (Central Motor Vehicle Regulation Approval)	-
인도네시아 (3)	BPOM (인도네시아식약청등록)	SNI (인도네시아 국가규격)	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중국 (29)	AQSIQ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CCC (중국강제인증)	CCS (중국선급인증)
	CQC (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CSEL (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CSQL (중국안전품질승인)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중국환경표지인증)	CGAC (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시험센터)	CMA (중국계측학허가인증)
	CPA (중국 계측기 형식승인)	HG/T 2888-2010 (중국고무장갑 시험검사)	ICAMA (중국농업부등록)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LA Mark	MOH (중국보건부인증)	NIM(중국계량과학원)
	NMPA(구.CFDA) (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중국위생허가 포함	NHFPC (신자원식품인증)	NAL (중국통신인증)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CVC (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GB-Test	건설산업과학기술 성과평가인증	중화인민공화국 비료임시등록증
	중국 유기농 인증	중국미생물수입등록	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폐기물 선적 전 검사	CEL (China Energy Label, 중국에너지라벨 효율등급)	-
카자흐스탄 (1)	GOST-K (카자흐스탄 인증)	-	-
두바이(1)	DEWA (두바이 수전력청 인증)	-	-
캐나다 (7)	CAN/CGSB155.20 (캐나다 방염원단인증)	CSA (캐나다표준규격)	CRN (캐나다압력제품등록)
	CWB (캐나다용접협회)	HC (캐나다의료기기인증)	IC (캐나다산업성)
	TC (캐나다 위험물질 운송 인증)	-	-
쿠웨이트 (1)	KUCAS (쿠웨이트 제품적합인증)	-	-
페루 (1)	Registro sanitario (보건등록증)	-	-
폴란드 (1)	B mark	-	-
에티오피아 (1)	에티오피아 판매인증서	-	-
필리핀 (1)	ERC	-	-
라오스(1)	MPT (라오스우정통신부인증)	-	-
베트남 (6)	CR Mark (베트남품질안전인증)	CBMP (베트남 식약처 인증)	VR (베트남선급인증)
	베트남보건부의약청화장품등록	베트남 의료기기 수입허가	베트남 식품 인허가
호주 (12)	ACRS (호주신뢰성인증)	ADR (호주자동차안전및배기량규격)	AGA (가스안전인증-호주)
	AS (호주규격협회)	A-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유선)	CodeMark (호주건축법규위원회 건축자재 인증)
	C-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무선)	RCM (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QAS)
	TGA (호주의약품규제기관)	Water Mark (호주배관제품인증)	WELS (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홍콩(1)	OFTA (홍콩이동통신인증)	-	-
이라크(1)	COSQC (이라크표준)	-	-
남아프리카 공화국(1)	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독립통신위원회)	-	-
이란(2)	ISIRI (이란 강제인증)	MOH (이란보건부등록)	-
나이지리아 (1)	SONCAP (나이지리아 강제 인증)	-	-
아랍에미레 이트(1)	EQM (아랍에미레이트 제품적합성마크)	-	-
이스라엘 (1)	SII (이스라엘표준연구소)	-	-
	AEC-Q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AEM(장비제조및서비스에 관한국제무역협회인증)	ALE 1.0 (RFID 제품인증)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국제 (71)	AMCA (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ATP (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BLUESIGN (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Bluetooth (블루투스제품인증)	BQB (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목적 인인증)	BRCFOOD (식품안전글로벌규격)
	BRC IOP(국제식품안전협회 포장재 승인 규격)	Chip card approval (스마트카드사 승인)	COSPAS-SARSAT (조난경보기또는위치정보제품인증)
	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정보기술 보안 평가)	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FAIRTRADE (국제 공정무역마크)	FSC (국제산림관리협회의)
	FTC (화염시험인증)	FIFA QUALITY PRO (국제축구연맹품질인증)	GOTS (국제유기농섬유규격)
	Greenguard (친환경인증시스템)	GRS (Global Recycled Standard)	GLOBAL G.A.P (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
	G7Master (국제 인쇄표준)	HALAL(IFANCA) (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HDMI(PC와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표준규격)
	HSNO APPROVAL (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IECEE (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IECEX (국제방폭상호인증)	ISO 3834 (용접ISO인증)	ISO22899 (해양 제트화재 발생위험 안전인증)
	ISO7096 (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ISO12500 (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
	ITF Ball Approval (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볼승인)	ITF Classified Court pace	ISO 15848 (산업용 밸브- 유해물질 누설에 대한 측정, 시험 및 자격 검증절차)
	KOSHER (유대교식품적법인증)	LPCB (보안및화재예방인증)	MPR2 (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NADCAP (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NFPA1971 (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규격)	NON GMO
	OCS (유기농섬유인증)	OK compost	OE (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OIML (국제법정계량기구)	OpenADR (전력수요관리인증)	PCI (신용카드 단말기보안국제규격)
	PDI (배관,배수 인증)	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Qi (무선충전표준 인증)
	SG-Mark (소비자제품안전인증)	SIL (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SINCERT (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
	SUCI (이슬람생활용품인증)	TCO05 (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 자외선 차단 검증인증)
	Toxproof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UCI (국제사이클연합인증)	WHO (세계보건기구)
	WPS (선급용접절차승인)	GCC (중동적합성 마크)	IHE Connectathon
	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	HACCP International Food safety Program Certification	TAT (Type Acceptance Test/ MESC SPE 77-300, 산업용 밸브 형식인증)
	HART Registered (Highway Addressable Remote Transducer)	STS (Standard Transfer Specification)	

※ RoHS : EU RoHS, 일본J-MOSS, 중국RoHS, ELV(폐자동차처리지침), WEEE(폐가전처리지침) 등
국제환경규제에 대비한 유해물질분석을 지원

※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미국국가인정시험소) : 미국노동부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
<http://www.osha.gov/dts/otpc/nrtl/>)에서 인정한 시험소로서 현재 19개 기관이 인정을 받음 (NRTL인정 19개기관: ARL,
BACL, CSA, CSL, FM, IAPMO, ITSNA, MET, NNA, NSF, QAI, QPS, SGS, SWRI, TUV, TUVPTL, TUVAM, TUVPSG, UL)

20년 산업별 시스템인증 현황[12개]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시스템인증 (12개)	ISO13485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인증)	ISO 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	IATF 16949 (ISO/TS16949) (자동차품질경영시스템)
	AS 9100 (항공우주품질경영시스템)	FSSC 22000 (식품안전시스템인증)	ISO 22716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ISO15378 (의료포장자재 공급사의 품질경영시스템)	ISO/IEC 80079-34 (Explosive atmospheres -- Part 34: Application of quality systems for equipment manufacture)	VDA 6 품질경영(유럽 및 독일 자동차 산업 공급업체)
	FAMI-QS (Feed Additive and preMixture System) 사료첨가제 및 pre Mixture 시스템	ISO15197 (개인용 혈당측정 시스템 표준시험방법 가이드라인)	Higg Index (친환경섬유제조자인증)

※ 시스템인증은 산업별로 요구되는 시스템증에 대한 지원 범위 확대
단, ISO9001인증, ISO14001인증은 지원대상에 불포함.

각 인증별 책임회사비용 한도

[단위 : 천원]

인증명	품 목	책임회사비용 품목별 지원한도금액
NMPA (구 CFDA)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	2,000
CPNP	화장품	2,500
CE	의료기기 (Class II 이상)	2,500
EAC (CU포함)	전품목	500
FDA	의료기기	2,000
NOM	전기전자	1,000
IC	통신기기	1,000
BIS	전기전자	2,000
SIRIM	전기전자	1,000
동·서남아시아 식약처인증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화장품, 식품, 식품접촉재	300
REACH	화학물질	1,000

① 해외 지식재산권등록, 현지 시험·인허가

- 해외진출 제품에 대한 해외상표등록, 해외디자인, 해외실용신안 및 해외특허 등 지적재산권 등록, 현지 시험·인허가·연장 서비스 지원
- 지재권 출원 및 등록 관련 절차 대행비용, 컨설팅비용 등 지원
 - * 계약 시 산출내역 중 협약기간 내 완료된 건에 한해 지원가능
 - ex) 출원→심사→등록 절차 중 심사까지 완료되었을 시 출원 및 심사 비용만 지원가능
- 지재권의 출원인과 등록인이 동일해야 하며, 권리 양·수도 및 양수 지재권 관련 비용 지원불가
- 지재권 관련 심판 및 소송 비용 지원 불가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 지재권에 한해 지원 가능
 - * 법인 대표자 또는 소속직원 개인 명의 지재권 관련 비용 지원 불가

《 해외 지재권 등록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운영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수행기관→참여기업) ② 부가세 입금증(송금증)(참여기업→수행기관) ③ 지적재산권 증빙서류(지재권 출원 또는 등록증 또는 실용신안 등 증빙문서) ④ 결과보고서 ⑤ 표준계약서(선금신청 시에만 해당)[별지 제08호] ⑥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신청 시에만 해당)

② AEO 공인획득 지원

- AEO 공인에 필요한 시설비용(공인심사 및 종합심사)* 및 컨설팅 소요 비용(공인·종합심사, 자체평가) 지급

* ‘내부통제시스템’ 공인기준의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안전관리’ 공인기준의 직원식별 시스템, 비인가자 접근 방지를 위한 감시카메라, 울타리 설치, 기타 접근통제장치, 물품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등 AEO 공인획득을 위한 시설투자 제반비용지원

《 AEO 공인획득 지원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운영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수행기관→참여기업) ② 부가세 입금증(송금증)(참여기업→수행기관) ③ 결과보고서 (AEO공인증서, 진행경과내용 포함) ④ 표준계약서(선금신청 시에만 해당)[별지 제08호] ⑤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신청 시에만 해당) *결과보고서내용의 결과확인은 별표참조

구분	기한 내 종결 시	기한 내 미종결 시
공인 심사	AEO공인증서 사본	[업체] 업체명,사업자번호,신청번호 제출 → [관세청] 심사이력 조회· 공인심사 수행여부 회신
종합 심사	AEO공인증서 사본	[업체] 업체명,사업자번호,신청번호 제출 → [관세청] 심사이력 조회· 종합심사 수행여부 회신
자체 평가	[업체] 업체명,사업자번호, 자체평가번호 제출 → [관세청] 심사이력 조회· 자체평가 수행여부 회신	[업체] 업체명,사업자번호, 자체평가번호 제출 → [관세청] 심사이력 조회· 자체평가 수행여부 회신

③ SMETA 획득 지원

- 해외진출 시 요구되는 SMETA* 인증에 필요한 신규심사(Initial), 확인심사(Follow-up), 컨설팅, 갱신심사(Re-Audit) 등 비용 지원

* SMETA(Sedex Members Ethical Trade Audit) : 공급자가 노사문제, 환경보호 등의 측면에서 윤리 경영을 하는지 제3기관에게 심사를 받는 감사제도

- 신규심사 비용을 지원받은 후 Non-Compliance 및 Observation 항목 발생으로 확인심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지원 가능

- 참여기업 협약기간 내 심사가 완료되어 감사보고서가 인증기관(SEDEX)의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 한해 지원

* 컨설팅 결과보고서 내에 시스템 등록코드 기재 필수

《 SMETA 인증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운영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수행기관→참여기업) ② 부가세 입금증(송금증)(참여기업→수행기관) ③ 감사보고서(SMETA audit report) ④ 결과보고서(표지에 감사보고서 시스템 등록코드 기재) ⑤ 표준계약서(선금신청 시에만 해당)[별지 제08호] ⑥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신청 시에만 해당)

① 수출 관련 서류대행 및 현지등록

- 수출 관련 각종 서류대행 지원
 -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대행
 - 통관/선적필요서류, 결제관련서류 등 수출물류 서류작성 컨설팅
 - 무역자동화(전자무역서비스), 사후관리(관세환급신청서 등) 대행
 - FTA 원산지 관련 서류대행 등
- 현지법인·지사·대표처 등록 등 현지등록 서류대행

《 수출관련서류대행/현지등록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운영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인보이스(해외기업)(수행기관→참여기업) ② 부가세 입금증(송금증)(참여기업→수행기관) ③ 결과보고서(수행성과물 첨부) ④ 표준계약서(선금신청 시에만 해당)[별지 제08호] ⑤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신청 시에만 해당)

② 신용인증 서비스

- 수출을 위한 자사의 해외신용등급조회(외국어 보고서) 발급 지원
- 국내용 신용등급조회 및 보고서 발급 비용 지원 불가

《 신용인증 서비스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운영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인보이스(해외기업)(수행기관→참여기업) ② 부가세 입금증(송금증)(참여기업→수행기관) ③ 결과보고서(해외신용등급 보고서 첨부) ④ 표준계약서(선금신청 시에만 해당)[별지 제08호] ⑤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신청 시에만 해당)

① TV·신문·잡지·PPL 홍보

- 해외에서 송출 또는 발행되는 TV, 신문, 전문 잡지, 정기간행물 등에 광고 게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라디오 지원불가)
- 국외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 방송 및 웹 드라마 등을 활용하여 제품을 홍보하는 간접광고(PPL)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국내용 또는 한국어 잡지·간행물 광고 지원불가
- 동영상을 활용한 홍보 시 영상 제작비용은 지원이 불가하며, 홍보 동영상 분야의 별도 서비스 이용 필요

《 TV·신문·잡지·PPL 홍보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운영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인보이스(해외기업)(수행기관→참여기업) ② 부가세 입금증(송금증)(참여기업→수행기관) ③ 결과보고서(TV, 신문, 잡지, PPL화면 등 증빙자료 첨부) ④ 표준계약서(선금신청 시에만 해당)[별지 제08호] ⑤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신청 시에만 해당)

② 온라인 마케팅

- SNS·검색엔진 마케팅, 해외인플루언서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
* 단순 메일링 또는 문자 발송 형태의 홍보비용 지원 불가
- 동영상을 활용한 홍보 시 영상 제작비용은 지원이 불가하며, 홍보 동영상 분야의 별도 서비스 이용 필요

《 SNS·검색엔진마케팅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운영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인보이스(해외기업)(수행기관→참여기업) ② 부가세 입금증(송금증)(참여기업→수행기관) ③ 홍보계약서 혹은 온라인신청서(참여기업/수행기관↔광고 플랫폼) ④ 결과보고서(SNS, 온라인사이트 등록 사진 또는 홈페이지 주소 URL, 클릭수 또는 view 포인트 등 증빙첨부) ⑤ 표준계약서(선금신청 시에만 해당)[별지 제08호] ⑥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신청 시에만 해당)

③ 홈쇼핑/온·오프라인 쇼핑몰 마케팅

- 해외바이어 대상 홈쇼핑/온·오프라인 쇼핑몰 마케팅(오프라인 입점대행, 온라인 해외독립몰 등록)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홈쇼핑/온·오프라인매장 입점대행, 판촉전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운영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인보이스(해외기업)(수행기관→참여기업) ② 부가세 입금증(송금증)(참여기업→수행기관) ③ 결과보고서(홈쇼핑/온·오프라인 입점결과 관련 사진 증빙) ④ 표준계약서(선금신청 시에만 해당)[별지 제08호] ⑤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신청 시에만 해당)

④ [해외 홍보/광고 사후정산] 해외 TV·신문·잡지 홍보 사후정산

- 해외에서 발행되는 신문·전문잡지 등 해외 정기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 하거나 해외 TV방송 광고에 소요되는 실비용 지원
 - * 국내매체 광고비용 또는 동영상 제작비용 지원불가
- 신문광고의 경우 전단지, 유사 신문을 이용한 광고는 지원불가
- 해외 전문 (웹)잡지, 정기간행물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가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참여기업 직접수행이 아닌 대행기관을 이용할 경우 지원불가
- 홍보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가 협약기간 내에 있어야 함

《 해외상품홍보 사후정산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 先 집행, 참여기업→운영기관]	① 인보이스(Invoice) ② 홍보·광고계약서 또는 홍보·광고신청서(홍보기간 명기)* ③ 입금증(송금증) 또는 카드매출전표(세부지출내역 포함) ④ 해외홍보/광고 수행결과 보고서[별지 제06-1호]** ⑤ 해외홍보/광고 사후정산 관련 서약서[별지 제06-2호] * 홍보·광고신청서가 없는 경우 신청확인화면 캡처 등으로 대체가능 ** 잡지·간행물의 증빙사진은 전면, 광고페이지, 후면사진 필수

⑤ [해외 홍보/광고 사후정산] 온라인 마케팅 사후정산

- 해외 SNS 마케팅, 해외 검색엔진 및 포털 사이트 광고, 해외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 국내매체 광고비용 또는 동영상 제작비용 지원불가
- 해외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의 경우 해당 인플루언서가 사업자등록이 되었거나 소속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가능
- 참여기업 직접수행이 아닌 대행기관을 이용할 경우 지원불가
- 홍보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가 협약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온라인 마케팅 사후정산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 先 집행, 참여기업↔운영기관]	① 인보이스(Invoice) ② 홍보·광고계약서 또는 홍보·광고신청서(홍보기간 명기)* ③ 입금증(송금증) 또는 카드매출전표(세부지출내역 포함) ④ 해외홍보/광고 수행결과 보고서[별지 제06-1호] ⑤ 해외홍보/광고 사후정산 관련 서약서[별지 제06-2호] * 홍보신청서가 없는 경우 신청확인화면 캡처 등으로 대체가능 **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경우 인플루언서의 사업자등록증/소속사계약서 제출

* 음란물 공유·사행성·친목 목적으로 개설된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로 확인될 경우 지원불가

① 수출브랜드개발

- 기업 및 제품의 네이밍, 브랜드 현지화 컨설팅 등을 지원

* BI/CI 개발은 디자인개발 분야에 해당되며 브랜드 개발/관리 분야로 정산 불가

《 수출브랜드개발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운영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수행기관→참여기업) ② 부가세 입금증(송금증)(참여기업→수행기관) ③ 결과보고서(브랜드개발 완료 파일 등 증빙서류 포함) ④ 표준계약서(선금신청 시에만 해당)[별지 제08호] ⑤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신청 시에만 해당)

② 제품매뉴얼 제작

- 수출을 위한 외국어 제품매뉴얼 제작비용 지원

- 인쇄비용 및 디자인비용 지원 불가
- 한국어 제품매뉴얼은 지원 불가하며, 외국어-한국어 병기 시 지원 가능하나 외국어 비중이 한국어 비중보다 낮을 경우 지원 불가

《 제품매뉴얼 제작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운영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수행기관→참여기업) ② 부가세 입금증(송금증)(참여기업→수행기관) ③ 결과보고서(제품매뉴얼 등 증빙서류 포함) ④ 표준계약서(선금신청 시에만 해당)[별지 제08호] ⑤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신청 시에만 해당)

③ 정품인증 서비스

- 수출품을 가품, 모조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품임을 증명하는 제품부착 라벨 제작, 외국어 랜딩페이지 제작, 기타 전산 솔루션 도입 등의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원
- 한국어 랜딩페이지 제작비용은 지원 불가하나, 외국어 랜딩페이지에 한국어를 병기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정품인증 서비스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운영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수행기관→참여기업) ② 부가세 입금증(송금증)(참여기업→수행기관) ③ 결과보고서(제품부착, 랜딩페이지 등 증빙첨부) ④ 표준계약서(선금신청 시에만 해당)[별지 제08호] ⑤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신청 시에만 해당)

11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① 해외전시회 참가지정 수행기관 활용 또는 사후정산

- 제품홍보를 위한 해외전시회 참가 관련 참가등록비, 부스임차료, 부스설치비(부스디자인 비용 포함) 및 추가장치비, 샘플운송비(편도 및 왕복)에 한하여 집행 가능
 - 교통운임*, 현지체재비, 통역비, 전시참가보험료, 전시회 참가 취소 수수료, 현지통신비, 홍보비, 인쇄비, 자산성 제품 등은 지원불가
 - * 참여기업 항공임의 경우 일부 지원가능(⑥참여기업 국제항공임 사후정산 참조)
 - 샘플운송비는 수출신고필증 거래구분 85번, 92번 및 결제방법 GN 일 때만 지원되며 샘플 외 판매용 물품 운송비 지원불가
 - 참여기업이 직접 부스를 제작하는 경우 부스설치비 지원불가
- 협약기간 내에 개최 및 종료되는 해외전시회에 한하여 지원
 - 단, 협약기간 내에 개최 및 종료되는 전시회의 신청을 위해 협약 기간 전 선납한 금액 지원가능(사후정산 시)
- 정부부처,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단법인, 협동조합, 협회 등에서 주관, 주최, 인솔하는 전시회의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공문을 받아 제출한 경우 지원가능
 - 주최/주관/인솔기관이 다수인 경우 총괄기관 또는 전시회 참가 신청접수기관의 공문으로 같음
 - 중복지원 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및 제재조치 가능
- (사후정산 시) 참가신청 대행기관을 이용한 경우 추가증빙서류 제출 필요
 - 대행기관의 참가확인 공문, 대행기관의 참가비 청구서, 참여기업의 입금증 등 운영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제출
 - 대행기관 대행수수료 지원 불가
- (지정수행기관 활용 시)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수수료 지원 가능

- (환율적용) ① 송금증에 적용환율이 표기된 경우 : 표기 환율 적용,
② 송금증에 적용환율 표기되지 않은 경우 : 송금 당일 하나은행 외환 포탈의 고시환율 내 '최초'고시회차 매매기준율 적용(VAT, 송금수수료 지원불가)

* 하나은행 외환포탈에서 취급되지 않는 외화(예: CNH)의 경우 '서울외국환 중개'의 환율 적용

《 지정 수행기관 활용 : 전시회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운영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인보이스(해외기업)(수행기관→참여기업) ② 부가세 입금증(송금증)(참여기업→수행기관) ③ 전시회 부스임차확인서류(계약서 또는 참가확인서) ④ 샘플운송비 증빙서류*_해당시 ⑤ 참가 결과보고서(참가증빙사진 포함)[별지 제03호] ⑥ 표준상담양식[별지 제04호] or 상담일지(자체양식) ⑦ 표준계약서(선금신청 시에만 해당)[별지 제08호] ⑧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신청 시에만 해당) * 운송비 내역 세금계산서(인보이스), B/L, 수출신고필증(거래구분 85번, 92번, 결제방법 GN(무상거래)에 한함), 패킹리스트 등

- 1) 전시회 주최, 주관, 장소, 전시성과 및 바이어 명함 등이 결과보고에 있어야 함
- 2) 참가증빙사진에는 업체명이 나오는 배너와 바이어와의 상담 모습이 있어야 함

《 사후정산 : 전시회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 先 집행, 참여기업↔운영기관]	① 참가등록비, 부스임차료, 부스설치비, 추가장치비 인보이스(세금계산서) 및 송금증(카드매출전표)* ② 샘플운송비 증빙서류**_해당시 ③ 전시회 참가신청서 및 안내자료 ④ 참가 결과보고서(참가증빙사진 포함)[별지 제02-1호] ⑤ 전시회 사후정산 관련 서약서[별지 제02-2호] ⑥ 표준상담양식[별지 제04호] or 상담일지(자체양식) * 송금 금액은 청구된 금액과 동일해야 하며, 부가세 지원 불가 ** 운송비 내역 세금계산서(인보이스), B/L, 수출신고필증(거래구분 85번, 92번, 결제방법 GN(무상거래)에 한함), 패킹리스트 등

- 1) 참여기업의 해외법인, 지사에서 비용을 지급한 경우, 참여기업 해외법인 및 지사에 대한 증빙(현지 법인등록증, 주거래은행의 해외직접투자신고서 및 주거래은행의 해외투자계획서), 해외법인 및 지사에서 지급한 서류 추가제출
- 2) 전시회 주최, 주관, 장소, 전시성과 및 바이어 명함 등이 결과보고에 있어야 함
- 3) 참가증빙사진에는 업체명이 나오는 배너와 바이어와의 상담 모습이 있어야 함

②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지정 수행기관 활용 또는 사후정산)

-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관련 참가등록비, 부스임차료, 부스설치비 (부스디자인 비용 포함) 및 추가장치비 등 전시회 참가 관련 직접비에 한해 지원
 - 교통운임, 체재비, 통역비, 전시참가보험료, 전시회 참가 취소수수료, 통신비, 홍보비, 인쇄비, 자산성 제품 등은 지원불가
 -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시 물품(샘플)운송비 지원 불가
 - 참여기업이 직접 부스를 제작하는 경우 부스설치비 지원불가
- (사후정산 시) [참고 1]UFI 인증 국제전시회 및 [참고 2]한국전시산업진흥회 인증 국제전시회만 정산가능
- (지정 수행기관 활용 시) UFI 및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의 인증을 받지 않은 국내개최 국제전시회도 정산가능
- 협약기간 내에 개최 및 종료되는 전시회에 한하여 지원
 - 단, 협약기간 내에 개최 및 종료되는 전시회의 신청을 위해 협약 기간 전 선납한 금액 지원가능(사후정산 시)
- 정부부처,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단법인, 협동조합, 협회 등에서 주관, 주최하는 참가전시회의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금전지원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공문을 받아 제출한 경우 지원가능
 - 주최/주관/인솔기관이 다수인 경우 총괄기관 또는 전시회 참가 신청접수기관의 공문으로 같음
 - 중복지원 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및 제재조치 가능
- (사후정산 시) 참가신청 대행기관을 이용한 경우 추가증빙서류 제출 필요
 - 대행기관의 참가확인 공문, 대행기관의 참가비 청구서, 참여기업의 입금증 등 운영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제출
 - 대행기관 대행수수료 지원 불가
- (지정수행기관 활용 시)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수수료 지원 가능

《 지정 수행기관 활용 : 전시회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운영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인보이스(해외기업)(수행기관→참여기업) ② 부가세 입금증(송금증)(참여기업→수행기관) ③ 전시회 부스임차확인서류(계약서 또는 참가확인서) ④ 참가 결과보고서(참가증빙사진 포함)[별지 제03호] ⑤ 표준상담양식[별지 제04호] or 상담일지(자체양식) ⑥ 표준계약서(선금신청 시에만 해당)[별지 제08호] ⑦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 신청 시 사본 제출)

- 1) 전시회 주최, 주관, 장소, 전시성과 및 바이어 명함 등이 결과보고에 있어야 함
- 2) 참가증빙사진에는 업체명이 나오는 배너와 바이어와의 상담 모습이 있어야 함

《 사후정산 : 전시회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운영기관]	① 참가등록비, 부스임차료, 부스설치비, 추가장치비 인보이스(세금계산서) 및 송금증(카드매출전표)* ② 전시회 참가신청서 및 안내자료 ③ 참가 결과보고서(참가증빙사진 포함)[별지 제02-1호] ④ 전시회 사후정산 관련 서약서[별지 제02-2호] ⑤ 표준상담양식[별지 제04호] or 상담일지(자체양식) * 송금 금액은 청구된 금액과 동일해야 하며, 부가세 지원 불가

- 1) 전시회 주최, 주관, 장소, 전시성과 및 바이어 명함 등이 결과보고에 있어야 함
- 2) 참가증빙사진에는 업체명이 나오는 배너와 바이어와의 상담 모습이 있어야 함

【<UFI 인증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고 1】

※아래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UFI 인증 국제전시회로 확인(UFI 공문 혹은 주최측의 공문 및 증빙 필요)
될 경우 정산가능

연번	전시회명(영문)	전시장소
1	BeFe Babyfair	BeFe Inc.
2	BIO KOREA International Convention	BIO KOREA Organizing Committee
3	Busan International Machinery Fair	KIMI Co., Ltd.
4	Busan International Seafood & Fisheries Expo	BEXCO
5	Chemical Manufacturing Expo Korea	Messe Esang Co., Ltd.
6	Environment & Energy Tech	BEXCO
7	Food Week Korea	Coex Co., Ltd
8	Green Car Korea	Kimdaejung Convention Center
9	Gwangju ACE Fair	Kimdaejung Convention Center
10	Gwangju Food	Kimdaejung Convention Center
11	INTERMOLD KOREA	Korea Die & Mold Industry Cooperative
12	International Climate & Environmental Fair	Kimdaejung Convention Center
13	International Exhibition on Environmental Technology & Green Energy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14	International Fire & Safety EXPO KOREA	EXCO
15	International Green Energy Expo Korea	EXCO
16	International Machine Tools & Parts Fair	Changwon Exhibition
17	Korea Build	Messe Esang Co., Ltd.
18	Korea Innovative Safety & Security Expo	KINTEX
19	Korea International Boat Show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20	Korea Metal Week	Korea Trade Fairs Ltd.
21	Korea Ocean Expo	Reed K. Fairs Ltd.
22	Korea Railways and Logistics Fair	Messe Frankfurt Korea Ltd.
23	Korea Railways and Logistics Fair	BEXCO
24	Korea Welding & Cutting Show	Changwon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
25	KORMARINE	Reed K. Fairs Ltd.
26	LED Expo	EXPOnU CO., LTD.
27	Sendex	KINTEX
28	Senor - Medical Industry Fair	SEMEDIC
29	Seoul Food	KOTRA
30	Seoul International Café Show	EXPORUM Inc.
31	Seoul Living Design Fair	Design House
32	Sourcing Fair	Coex Co., Ltd
33	SPOEX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34	SWEET	Kimdaejung Convention Center

※20년 상반기 기준 리스트로 UFI 인증 유효여부는 주최기관이나 UFI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인증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고 2】

※아래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인증 국제전시회로 확인(한국전시산업진흥회의 공문 필요)될 경우 정산가능

연번	전시회명(국문)	전시장소	주최기관
1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Coex	(주)엑스포럼
2	호텔페어	Coex	(주)메세이상
3	맘앤베이비엑스포	KINTEX	(주)유아림
4	IFS 상반기 프랜차이즈서울	Coex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5	SIMTOS	KINTEX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6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컨퍼런스	EXCO	엑스코
7	대구국제안경전	EXCO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8	서울커피엑스포	Coex	코엑스
9	국제제약·화장품위크 + 국제포장기자재전	KINTEX	(주)경연전람, (주)케이와이엑스포
10	서울국제수산물식품전시회	Coex	비투엑스포(주)
11	국제소방안전박람회	EXCO	엑스코
12	국제전자회로 및 실장산업전	Songdo ConvensiA	(사)KPCA / (주)케이와이엑스포
13	SEOUL VR·AR EXPO	Coex	(주)메세이상
14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국제건강산업박람회	Coex	(주)한국국제전시
15	서울국제사진영상전	Coex	(사)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
16	고양국제꽃박람회	일산 호수공원 & 원당 화훼단지	(재)고양국제꽃박람회
17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ICC JEJU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
18	국제 방송 · 음향 · 조명기기 전시회	Coex	(주)한국이앤엑스
19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KINTEX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	한국국제기계박람회	CECO	한국기계산업진흥회
21	바이오코리아국제컨벤션	Coex	바이오코리아 사무국
22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	DDP	일상예술창작센터
23	국제 전기전력전시회	Coex	한국전기기술인협회
24	한국전자제조산업전	Coex	리드케이웨어스(유)
25	대한민국화학제조산업대전	Songdo ConvensiA	(주)메세이상
26	CAFE SHOW VIETNAM	SECC(베트남 호치민)	(주)엑스포럼
27	경기국제보트쇼	KINTEX	킨텍스
28	한국국제낚시박람회	KINTEX	(사)한국낚시협회
29	SWEET	KDJ Center	김대중컨벤션센터
30	맘앤베이비엑스포	KINTEX	(주)유아림
31	국제환경산업기술 & 그린에너지전	Coex	환경보전협회
32	금속산업대전	KINTEX	한국전람(주)
33	인-코스메틱스 코리아	Coex	리드엑시비션스
34	국제 LED & OLED EXPO	KINTEX	(주)엑스포앤유
35	나노코리아	KINTEX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36	스마트테크 코리아	Coex	(주)엑스포럼
37	코리아빌드	Coex	(주)메세이상
38	세계 보안 엑스포	KINTEX	유비엠비엔(주)
39	국제안전보건전시회	Coex	(주)경연전람
40	광주국제 IoT·로봇박람회	KDJ Center	김대중컨벤션센터
41	국제그린카전시회	KDJ Center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2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	Coex	(주)세계전람
43	K·뷰티엑스포 방콕 & 방콕뷰티쇼	BITEC(태국 방콕)	킨텍스
44	핸드아티코리아 SUMMER	Coex	(주)메세이상
45	베페 베이비페어	Coex	(주)베페

46	미베 베이비엑스포	KINTEX	(주)미래전람
47	국제기후환경산업전	KDJ Center	김대중컨벤션센터
48	국제자원순환산업전	KINTEX	Re-Tech 조직위원회
49	세계 제약산업 전시회 CPhI Korea	Coex	Inform Markets
50	맘앤베이비엑스포	SCC	(주)유아림
51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	KINTEX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52	국제 병원 및 의료기기 산업 박람회	Coex	(주)메세이상
53	국제방역대회전시회	DCC	(사)한국방역협회
54	국제청소위생산업전	Coex	(주)서울메세인터내셔널
55	한국기계전	KINTEX	한국기계산업진흥회
56	K-PRINT	KINTEX	(주)한국이앤엑스
57	코리아펫쇼 서울	aT Center	(주)더페어스
58	프리뷰 인 서울	Coex	한국섬유산업연합회
59	해외유학&진로 박람회	Coex	한국전람(주)
60	대한민국방위산업전	KINTEX	(주)디엑스케이
61	광주 Ace Fair	KDJ Center	문화체육관광부 등
62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KINTEX	킨텍스
63	인터참코리아	Coex	(주)서울메세인터내셔널 등
64	한국국제승강기엑스포	KINTEX	행정안전부 등
65	하노이 국제베이비&키즈페어	I.C.E(베트남 하노이)	(주)세계전람
66	국제 고기능성 철강·비철금속산업전	EXCO	(주)더페어스
67	로보월드	KINTEX	한국로봇산업협회
68	IFS 하반기 프랜차이즈서울	Coex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69	오토살롱위크	KINTEX	(주)서울메세인터내셔널, 킨텍스
70	국제해양플랜트전시회	BEXCO	벡스코
71	대한민국 뷰티박람회	KINTEX	킨텍스
72	카페&베이커리페어	KINTEX	(주)미래전람
73	인터배터리	Coex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지산업협회 등
74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	KINTEX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75	KIMES BUSAN 부산 의료기기 전시회	BEXCO	(주)한국이앤엑스
76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	천안종합운동장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77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전주월드컵경기장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78	국제첨단소재 및 응용기술전 & 한국국제세라믹산업전	Coex	KOCEM / INTRA 추진위원회
79	서울국제불교박람회	SETEC	불교신문사
80	제주감귤박람회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	서귀포농업기술원
81	서울카페쇼	Coex	(주)엑스포럼
82	부산국제수산EXPO	BEXCO	부산광역시 등
83	JEC KOREA 국제 복합소재 전시회	Coex	JEC 그룹
84	광주미래식품전	KDJ Center	광주광역시 / 김대중컨벤션센터
85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	Coex	(주)세계전람
86	맘앤베이비엑스포	KINTEX	(주)유아림
87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	EXCO	엑스코
88	코엑스 푸드위크(서울국제식품산업전)	Coex	코엑스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홈페이지(<http://akei.or.kr>) [전시정보]-[국내전시일정]-[국제인증전시회]에서 인증 여부 검색가능하며, 상기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의 확인 공문 제출 필요

③ 현지 바이어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및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상담회/설명회/세미나

- 현지 바이어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및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설명회 개최를 위한 장소임차비, 장치비, 물품운송비 등 비용 지원
- 해외바이어 국내 초청 시 운임, 식대, 숙박비 지원(별표1 참조)
- 참여기업의 항공 등 교통운임, 현지 체재비, 통역비, 다과비, 음료비, 통신비, 홍보비, 인쇄비, 자산성 제품 등은 지원 불가

《 외국바이어 대상 상담회/세미나/시연회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운영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인보이스(해외기업)(수행기관→참여기업) ② 부가세 입금증(송금증)(참여기업→수행기관) ③ 상담회/세미나 등 개최 결과보고서(개최 관련 증빙사진 필수 첨부) ④ 표준계약서(선금신청 시에만 해당)[별지 제08호] ⑥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신청 시에만 해당) * 해외바이어 국내 초청 시 별도 비용증빙 필요(별표참조)
[별표 1]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시 지원내용 및 증빙서류	① 초청 항공운임료(왕복), 식대, 숙박비에 한해 지원 ② 숙박 : 1박 25만원 이내(최대 3박) ③ 식대 : 1일 3식까지, 1식 최대 10만원, 1일 총 15만원 이내 ④ 항공운임은 이코노미 클래스에 한해 지원 -숙박비 (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증(송금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왕복운임 내역서(보당패스, 영수증 등) 및 입금증(송금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식대 영수증(1식 각1장), 해외바이어 명함 및 신분증(여권) 사본

④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마케팅대행

- 해외전시회 참가 시, 사전·사후 마케팅을 통한 부스참여율 향상 및 실질계약 달성 지원
- * 해외전시회를 바우처를 통해 참가하지 않고 사전·사후마케팅 서비스만 바우처로 이용한 경우 항공임 사후정산 불가

《 해외전시회 사전·사후마케팅대행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운영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인보이스(해외기업)(수행기관→참여기업) ② 부가세 입금증(송금증)(참여기업→수행기관) ③ 결과보고서(수행성과물 첨부) ④ 표준계약서(선금신청 시에만 해당)[별지 제08호] ⑥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신청 시에만 해당)

⑤ 의료기기 제품설명회 개최 지원

- 해외바이어 및 해외보건의(사용자)를 초청하여 참여기업 의료기기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는 비용* 지원

* 장소임차비, 장치비, 물품운송비, 국내 보건의 여비 및 숙박비용, 해외바이어·보건의 항공여비 및 숙박비용, 개최를 위한 의료기기산업협회 심의비 등

- 의료기기산업협회의 개최 승인을 득한 제품설명회만 지원 가능
- 국내보건의는 시연자인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내보건의 지원비용 정산은 의료기기산업협회의 先심의 필요
- 해외바이어·해외보건의는 정식 초청된 경우에 한해 지원

《 의료기기제품설명회 개최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운영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인보이스(해외기업)(수행기관→참여기업) ② 부가세 입금증(송금증)(참여기업→수행기관) ③ 행사장 임차 Invoice(전자)(세금)계산서 및 송금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④ 행사장차임비용 Invoice(전자)(세금)계산서 및 송금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⑤ 행사장차 운송비용 Invoice(전자)(세금)계산서 및 송금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⑥ 의료기기산업협회 심의비 계산서 및 송금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⑦ 의료기기산업협회 승인확인서류(승인관련 전자우편, 공문 등) ⑧ 의료기기 제품설명회 개최 결과보고서[별지 제05표] ⑨ 참석자명단 또는 방명록 사본 ⑩ 표준계약서(선금신청 시에만 해당)[별지 제08호] ⑪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신청 시에만 해당)
[별표 1] 국내보건의 지원내용 및 증빙서류	① 숙박비, 식대, 운임료에 한해 지원 ② 숙박 : 1박 20만원 이내 ③ 식대 : 1일 3식까지, 1식 최대 10만원, 1일 총 15만원 이내 ④ 교통 : 왕복운임으로 이코노미 클래스 국내항공료, KTX, 고속버스 또는 이에 준하는 대중교통수단에 한해 인정 -숙박비 (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증(송금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식대 영수증(1식에 1장) -왕복운임 내역서(보당패스, 영수증 등) 및 입금증(송금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제품설명회 임상시연 관련 용역계약서 -보건의 자격증 사본
[별표 2] 해외보건의 및 해외바이어 지원내용 및 증빙서류	① 초청 항공운임료(왕복), 식대, 숙박비에 한해 지원 ② 숙박 : 1박 25만원 이내(최대 3박) ③ 식대 : 1일 3식까지, 1식 최대 10만원, 1일 총 15만원 이내 ④ 항공운임은 이코노미 클래스에 한해 지원 -숙박비 (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증(송금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왕복운임 내역서(보당패스, 영수증 등) 및 입금증(송금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식대 영수증(1식에 1장), 해외바이어 명함 및 신분증(여권) 사본

⑥ 참여기업 국제항공임 사후정산

-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등록된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서비스
中 해외전시회 서비스에 한해 참여기업 왕복 국제항공임 지원
 - * 숙박비, 육로·해상운임, 일비 등 기타 출장비, 편도항공임 지원 제외
 - ** 바우처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항공임만 지원가능하며, 서비스의 사전·사후 활동을 위한 항공임은 지원 불가
 - 바우처 협약기간 내 총 1회, 최대 2인의 이코노미석 항공임 지원
 - * 지원 대상은 참여기업의 대표 또는 해외영업에 필요한 직원으로 제한
 - ** 이코노미석(Y클래스 이하) 구매 후 자비(마일리지 포함) 업그레이드는 허용
 - 직항 항공권 발행이 원칙이나 직항노선이 없는 경우 경유 허용
 - * 단, 경유 시 경유지에서 24시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지원불가
 - 행사 개최일 및 폐막일 전후 2일 이내(현지시각 기준) 항공권만 인정
 - 수화물·기내식 추가비용, 유아·반려동물 동반운임, 국내운임 및 여행사 수수료(부가수수료, 취급수수료 등) 등은 지원 불가
 - 국제항공임 사후정산은 관련 전시회 서비스가 정산이 완료(정산입금 여부등록 단계)된 이후부터 진행
 - * 단, 정산요청은 관련 전시회 서비스를 정산요청한 이후부터 가능
 - 정부, 지자체, 협단체 등의 항공료 지원과 중복 수혜 불가
- ※ 중복 수혜를 받거나 항공임을 지원받은 출장기간 동안 수출목적외 활동을 할 경우 보조금 환수 및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 가능

《 국제 항공임 사후정산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 先 집행, 참여기업↔운영기관]	① 항공임 사후정산 신청서[별지 제07-1호] ② 항공임 사후정산 관련 서약서[별지 제07-2호] ③ 구매영수증(카드결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입금증) ④ 여정확인서(e티켓)* ⑤ 탑승권 사본** ⑥ 탑승자 4대보험 납입증명서(고용, 산재,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택일) *여정확인서와 탑승권간 예약번호 또는 항공권번호가 일치해야 인정(탑승권 분실 또는 훼손 시 정산불가) **탑승자 성명, 날짜, 좌석등급, 목적지 등이 확인되어야 하며, 예약내역에 연결편이 있는 경우 전체여정에 대한 탑승권 사본 일체 제출

⑦ 온라인 전시회 지원

- 기존 오프라인 전시회였으나, 천재지변·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전환된 전시회에 한하여 허용
 - 단, UFI 또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로부터 인증 받은 온라인전시회는 전환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샘플운송비를 제외한 기존 지원항목(참가등록비, 부스임차료, 부스 설치비)에 준하는 참가등록비 및 콘텐츠(온라인 전시관) 제작비를 운영기관 검토 후 지원
 - * 예) VR 온라인 부스 제작비용은 부스 임차료 및 설치비와 치환되므로 지원
- 샘플운송비, 홍보동영상 제작비, 카탈로그 제작비, 통·번역비, 전시 참가보험료, 취소수수료, 홍보비, 인쇄비, 자산성 제품 등 지원 불가
- 협약기간 내에 개최 및 종료되는 온라인 전시회에 한하여 지원
 - 단, 협약기간 내에 개최 및 종료되는 전시회의 신청을 위해 협약기간 전 선납한 금액 지원가능(사후정산 시)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협단체 등에서 주관, 주최 또는 모집하는 전시회의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공문 제출 필요
 - 주최/주관/모집 기관이 다수일 시 총괄 또는 모집기관이 대표 발행
- (사후정산 시) 참가신청 대행기관을 이용한 경우 추가증빙 제출 필요
 - 대행기관의 참가확인 공문, 대행기관의 참가비 청구서, 참여기업의 입금증 등 운영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제출
 - 대행기관 대행수수료 지원 불가
- (사후정산 시) 국내 개최 온라인 국제전시회의 경우 UFI 또는 한국 전시산업진흥회의 국제전시회 인증을 득한 경우에만 인정
 - 국내/해외 개최 구분은 주최기관의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결정

- 지정수행기관 활용 시 인증 여부와 무관하게 오프라인 전시회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지원 가능
- 지정수행기관을 활용하지 않는 미인증 온라인전시회는 지원 불가
- (지정수행기관 활용 시)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 수수료 지원 가능
- (환율적용) ① 송금증에 적용환율이 표기된 경우 : 표기 환율 적용,
② 송금증에 적용환율이 미표기된 경우 : 송금 당일 하나은행 외환포탈의 고시환율 내 최초 고시회차 매매기준율 적용(VAT, 송금수수료 지원불가)
- * 하나은행 외환포탈에서 취급되지 않는 외화는 ‘서울외국환중개’ 환율 적용

《 지정 수행기관 활용 : 온라인 전시회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운영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인보이스(해외기업)(수행기관→참여기업) ② 부가세 입금증(송금증)(참여기업→수행기관) ③ 전시회 참가 증빙서류(계약서 또는 참가확인서) ④ 온라인 전환 관련 전시회 주최측 공문 또는 안내자료 (오프라인⇒온라인 전환 증빙) ⑤ 참가 결과보고서(참가증빙사진 포함)[별지 제10-1호] ⑥ 온라인 상담양식[별지 제11호] or 상담일지(자체양식) ⑦ 표준계약서(선금신청 시에만 해당)[별지 제08호] ⑧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신청 시에만 해당)

- 1) 전시회 주최, 주관, 장소, 전시성과 및 바이어 정보 등이 결과보고에 있어야 함
- 2) 참가증빙사진에는 온라인 전시관 내 기업 배너와 제품 사진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사후정산 : 온라인 전시회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 先 집행, 참여기업↔운영기관]	① 참가등록비, 콘텐츠 제작비 인보이스(세금계산서) 및 송금증(카드매출전표)* ② 전시회 참가신청서 ③ 온라인 전환 관련 전시회 주최측 공문 또는 안내자료 (오프라인⇒온라인 전환 증빙) ④ 참가 결과보고서(참가증빙사진 포함)[별지 제10-2호] ⑤ 전시회 사후정산 관련 서약서[별지 제02-2호] ⑥ 온라인 상담양식[별지 제11호] or 상담일지(자체양식) * 송금 금액은 청구된 금액과 동일해야 하며, 부가세 지원 불가

- 1) 참여기업의 해외법인, 지사에서 비용을 지급한 경우, 참여기업 해외법인 및 지사에 대한 증빙(현지 법인등록증, 주거래은행의 해외직접투자신고서 및 주거래은행의 해외투자계획서), 해외법인 및 지사에서 지급한 서류 추가제출
- 2) 전시회 주최, 주관, 장소, 전시성과 및 바이어 정보 등이 결과보고에 있어야 함
- 3) 참가증빙사진에는 온라인 전시관 내 기업 배너와 제품 사진 등이 포함되어야 함

①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수출 및 해외진출 관련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지원
 - 관세환급 컨설팅, 수출 관련 세무·회계 컨설팅
 - 수출 및 해외 진출에 필요한 법률 컨설팅(심판, 소송비용 제외) 등

《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운영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인보이스(해외기업)(수행기관→참여기업) ② 부가세 입금증(송금증)(참여기업→수행기관) ③ 결과보고서(수행성과물 첨부) ④ 표준계약서(선금신청 시에만 해당)[별지 제08호] ⑥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신청 시에만 해당)

별첨 1. 중기부 수출마우처사업(성장마우처, 혁신마우처) 정산 관련 양식. 끝.